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

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등의 과세기  
준으로 적용될 「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  
하고자 합니다.

- 가. 고 시 일 : 2015. 12. 29.
- 나. 시 행 일 : 2016. 1. 1.
- 다. 고시내용 : 행정자치부 원안대로 결정고시
- 라. 고 시 문 : 별첨
- 마. 고시방법 : 인터넷 홈페이지, 강남구청 게시판

- 붙임 1. 2016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(안)
2. 2016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(안)
3.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계획
4. 2016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(서울시). 끝.

주무관 **이제철** 과표관리팀장 **성백도** 세무관리과장 **송필석** 기획경제국장 **김용운**

부구청장 직무대전결 12/28  
리 **주윤중**

협조자 세무1과장 **이상규** 세무2과장 **김광수**

시행 세무관리과-30207 ( ) 접수 ( )

우 06090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/ www.gangnam.go.kr

전화 02-3423-5613 /전송 02-3423-8832 / korea3154@gangnam.go.kr / 부분공개